

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·운영

▣ 재외선거관리위원회

- ☞ 설치기간 : 재외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재외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(약 7개월간)
- ☞ 설치단위 : 「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」 제2조에 따른 공관(제3조의 분관 또는 출장소 포함)



▣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

- ☞ 자격 :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고,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함.
- ☞ 구성 : 정수는 홀수로 구성,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2명 이내의 위원, 국회교섭단체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, 공관의 장 또는 공관의 장이 공관원 중에서 추천하는 1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

▣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임무

- ☞ 재외투표소 설치장소와 운영기간 등의 결정·공고
- ☞ 재외투표소의 투표관리
- ☞ 재외투표소의 투표사무원 위촉 및 투표참관인 선정
- ☞ 재외투표관리관이 행하는 선거관리사무 감독
- ☞ 선거범죄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사무
- ☞ 그 밖에 재외투표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